

□ 改正理由

自動車の 급격한 増加에 비하여 駐車場の 増設이 이에 따르지 못함에 따라 야기되고 있는 심각한 都市駐車問題를 解決하기 위한 停車場法の 改正(1990.4.7 法律 第4320號)에 따라 駐車專用建築物에 대한 建築規制를 緩和하고, 路外停車場을 設置하여야 할 團地造成事業의 종류와 規模등을 定하는 한편, 附設停車場을 設置하여야 할 施設物의 종류를 확대하고 그 設置基準을 強化하는 등 現行規定의 未備點을 補完하려는 것임.

□ 主要骨子

가. 停車場整備地區 안에서 駐車專用建築物을 建築할 경우 당해 建築物의 建蔽率· 坪地面積의 最小限度 및 容積率은 그 범위를 定하여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에 委任함으로써 당해 地域의 實情에 맞도록 함(令 第2條 第3項).

나. 일정규모이상의 團地造成事業을 施行할 경우에는 반드시 路外停車場을 設置하도록 하였는 바, 당해 團地造成事業의 종류를 宅地開發事業· 都市再開發事業 등 8個事業으로 하고, 그 규모는 都市交通整備 促進法施行令의 規定에 의한 交通影響評價의 對象이 되는 규모로 함(令 第4條).

다. 建築物외에 事實上 駐車需要가 많은 골프練習場· 屋外水泳場 등의 施設物에 대하여도 附設停車場을 設置하도록 하고, 附設停車場의 設置基準은 正함에 있어 현재는 一률적으로 施設物 面積만을 基準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施設物 面積외에 호텔의 客室數· 病院의 病床數· 競技場의 收容人員 등의 施設利用者를 基準으로 하여 附設停車場 所要面積을 算定하도록 함(令 第6條 第1項).

라. 附設停車場의 設置基準을 地域實情에 따라 탄력적으로 定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基準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地方自治

團體의 條例로 이를 強化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人口 50萬 미만의 都市의 경우는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基準을 緩和할 수 있도록 함(令 第6條 第2項)

마. 車輛通行 금지 또는 주변의 土地의 이용상황등으로 인하여 停車場의 이용이 事實上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施設物의 내부 또는 부지안에서 停車場의 位置를 변경하는 경우 및 당해 施設物의 設置基準을 초과하는 附設停車場에 대하여는 당해 停車場의 用途變更을 例外的으로 허용함으로써 民願解消 및 建築物 등의 이용增進을 도모함(令 第12條 第1項)

바. 停車場을 設置할 때 占用料 減免 對象이 되는 空公施設은 현재에는 道路· 公園· 廣場에 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學校· 運動場· 河川· 溜水池· 公用의 聽舍 등에 대하여도 이를 확대하여 民間資本 유치를 통한 停車場 設置를 촉진함(令 第13條)

주차장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장정비지구) ①법 제3조 제1항에서 “상업지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준주거지역 및 그 주변 지역과 일반주거지역·준공업지역을 말한다.

②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1. 건폐율 : 10분의 9이하
 2.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이상
 3. 용적률 : 1천 300퍼센트이하
- 제3조(권한의 위임) 건설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정비지구의 지정
 2.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정비계획의 결정
 3.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의 명령
 4. 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에

대한 시설의 개선, 공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제4조(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규모등) ①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의 종류
택지개발사업·주택지구조성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아파트지구개발사업·도시재개발사업·공업단지조성사업·산업기지개발사업 및 일단의 공업용지구조성사업으로 한다.
2. 사업의 규모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규모로 한다.

②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차장의 규모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교통영향평가서에 정하여진 주차장의 연면적중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2. 주차장의 관리방법

법 제13조의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방법에 의한다.

제5조(노외주차장의 공용 중지등의 신고)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수외의 노외주차장관리자가 노외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14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노외주차장의 공용의 중지 또는 폐지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4일전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후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노외주차장의 위치
2. 노외주차장의 종류 및 명칭
3.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시설의 내용. 이 경우 공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주차장이 노외주차장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5. 중지의 예정기간 또는 폐지의 시기
6.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유

②노외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공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 취지를 노외주차장의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강화할 수 있다. 다만, 인구 50만 미만의 도시의 경우에는 3분의 1의 범위안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완화할 수 있다.

③주차장정비지구·도시재개발구역 및 도시설계구역안에서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의 3분의 2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강화할 수 있다.

제7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법 제10조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차대수 8대의 규모를 말한다.

②법 제1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당해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이내로 한다.

③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 허가·인가 등(이하 “시설물 설치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부설주차장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부설주차장의 위치 및 주차대수
2. 부설주차장의 각 시설물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
3. 부설주차장의 형태
4. 부설주차장 설치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5. 공사착수년월일 및 준공예정년월일(기존의 주차장으로서 새로운 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설치계획서에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사설계도서(기존의 주차장으로서 새로운 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 설치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이상의 지형도
3.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을 기재한 토지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건축연면적·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태를 기재한 건물조서를 포함한다)
4. 토지등기부등본(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

제8조(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등) ①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물의 위치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으로 인하여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장소

2.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관람집회시설·위락시설·판매시설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숙박시설·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

3. 부설주차장의 규모

주차대수 8대이하

②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차장설치의무 면제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위치·용도 및 규모
2.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의 규모
3.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주차장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당해 비용의 납부에 관한 사항
4.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설치의무 면제신청서에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할 부지에 대하여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주차장설치의무면제 신청서를 제출하기전 60일 이내에 평가한 토지가액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는 제2항의 경우에 시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이 없거나 당해 시설물의 준공으로 설치할 계획이 없는 등의 사유로 당해 시설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이내의 장소에서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제2항의 주차장설치의무 면제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설치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직선거리 500미터이내에 있는 노외주차장의 사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주차장설치 비용의 납부등) 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설치허가등을 받기전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주차장설치 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①시장·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받은 경우에는 시설물준공검사필증(건축법 제7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가사용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교부할 때에 시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중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상사용기간은 납부된 주차장 설치비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설물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할 때의 당해 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기준에 의한 징수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이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을 지정함에 있어 당해 시설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주차장이 주차난이 심하거나 기타 당해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그 주차장외의 다른 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 ①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시설물”이라 함은 주차정정비지구내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관람집회시설·위락시설 및 판매시설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숙박시설 및 업무시설을 말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의 3분의 2의 범위안에서 당해 시설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이내의 장소에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설치비용의 절감이나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이상의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각 시설물의 대지경계선으로서 직선거리 300미터이내의 장소에 부설주차장을 공동으로 설치하게 하거나 당해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는 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설치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

다.

④시장·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시설물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그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명칭·위치
2. 시설물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주차장 설치명령을 하는 사유
4. 주차장의 설치규모
5. 주차장의 설치기간
6. 기타 주차장의 설치와 관련되는 사항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주차장설치계획서나 설치면제신청 및 비용납부계획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2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①법 제19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상황 등으로 인하여 시장·군수가 당해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 경우 변경후의 용도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즉시 주차장으로 환원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고, 변경된 용도로의 사용기간은 주차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기간에 한한다.
2.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가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시장·군수의 확인을 받은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 종전의 부설주차장은 새로운 부설주차장의 사용이 개시된 후에 이를 용도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주차장 부지에 증축되는 건축물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새로운 주차장이 사용 개시될 때까지 이에 대체되는 주차장을 당해 부지로

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점용료의 감면) ①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등의 공공시설”이라 함은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용의 청사·주차장 및 운동장을 말한다.

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도로·광장·공원 및 제1항의 공공시설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점용료를 감면한다.

1. 시장·군수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에 대한 점용료를 면제한다.
2. 시장·군수외의 자가 주차장정비지구안에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 부지에 대한 점용료를 면제한다.
3. 시장·군수외의 자가 주차장정비지구외의 지역에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에 대한 점용료를 당해 노외주차장의 설치일부 10년간 면제하고, 그 면제기간이 후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③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공용의 청사·하천·유수지·주차장 및 운동장을 말한다.

제14조(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그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토지매입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2. 시장·군수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의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의 2분의 1. 다만, 국·공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3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3. 시장·군수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의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의 3분의 1. 다만, 국·공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5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도시계획세징수액중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이 될 금액) 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율은 도시계획세징수액의 10퍼센트로 한다.

제16조(감독)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노외주차장관리자에게 감

독상 필요한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1. 노외주차장의 위치 및 명칭
2.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명령을 발하는 이유
4. 조치를 요하는 사항의 내용
5. 조치기간
6. 명령불이행에 대한 조치내용

제1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등)

①법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2와 같다.

②시장·군수는 노외주차장의 규모·노외주차장 설치지역의 특수성·위반행위의 정도 및 횡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을 그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제18조(도시계획구역외에 있어서의 준용)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중 일반 다수인이 이용하는 관광지·휴양지·유원지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관광지·휴양지·유원지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는 법 제12조 내지 제18조·법 제22조 내지 제25조 및 법 제29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과태료 부과) ①시장·군수는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후 위반사실을 명시한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시장·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신청된 단지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택지개발촉진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승인 등을 신청한 택지개발사업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허가신청된 시설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설치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등에 대하여는 제 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건축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신청된 건축물중 건축법에 의한 허가요건을 갖추었으나 건축법 제 44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으로 인하여 허가신청이 거부된 경우로서 동 건축허가 제한이 종료된 날부터 3월이내에 다시 동일한 내용의 건축허가가 신청된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등에 대하여는 제 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기존 주차장의 용도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당해 부설주차장이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부분의 용도변경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5조(기존 시설물의 용도변경등에 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의 기존 시설물 또는 부칙 제3조 및 부칙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용도변경되거나 증축되는 경우에는 별표1 비고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용도변경되거나 증축된 부분에 한하여 별표1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택지소유상환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호중 “건축물부설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한다.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 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1] 부설주차장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제6조제1항관련)

시 설 물	설치대수 산정기준	설치대상제외 시설물	
숙박시설	호텔·관광호텔·가족호텔·휴양콘도미니엄	2객실당 1대+부대운동시설별 산정대수+기타 부대 시설면적 40㎡당 1대	
	기 타	시설면적 15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50㎡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500㎡ 미만인 시설물
의료시설	종합병원	3병상당1대로 산정된 대수와 시설면적 120㎡당 1대로 산정된 대수중 많은 대수	
	기 타	시설면적 15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50㎡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외의 지역의 경우

시 설 물	설치대수 산정기준	설치대상제외 시설물	
		는 면적 500㎡미만인 시설물	
운동시설	골프장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정원 15인당 1대	
	기 타	상업지역 : 시설면적 150㎡당 1대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 : 시설면적 200㎡당 1대 기타 지역 : 시설면적 25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50㎡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500㎡미만인 시설물
관람집회 시설	운동경기관람장	수용인원 150인당 1대	
	예식장	시설면적 60㎡당 1대	면적 60㎡미만인 시설물
	기 타	상업지역·일반주거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시 설 물	설치대수 산정기준	설치대상제의 시설물
	역·준주거지역·준공업 지역 : 시설면적 100㎡당 1대 기타지역 : 시설면적 150㎡당 1대	100㎡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500㎡미만인 시설물
운수시설	공항시설·버스터미널·철도역	면적 150㎡미만인 시설물
	기타	상업지역 : 시설면적 150㎡당 1대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 : 시설면적 200㎡당 1대 기타지역 : 시설면적 25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50㎡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500㎡미만인 시설물	
판매시설	백화점·쇼핑센터	면적 80㎡ 미만인 시설물
	기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00㎡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500㎡미만인 시설물
위락시설	유흥음식점	면적 80㎡미만인 시설물
	기타	상업지역·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 지역 : 시설면적 100㎡당 1대 기타지역 : 시설면적 15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00㎡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500㎡미만인 시설물	
업무시설	상업지역·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 지역 : 시설면적 100㎡당 1대 기타지역 : 시설면적 15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00㎡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500㎡미만인 시설물
종교시설·전시시설·통신촬영시설·참고시설	시설면적 15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50㎡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500㎡미만인 시설물
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200㎡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500㎡미만인 시설물
단독주택	건축면적 300㎡이하의 1대, 건축면적 300㎡ 초과하는 경우는 1대에 300㎡를 초과하는 200㎡당 1대를 더한 대수	면적 200㎡미만인 건축물
공동주택	건축면적 150㎡당 1대	면적 150㎡미만인 건축물

시 설 물	설치대수 산정기준	설치대상제의 시설물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	상업지역·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 지역의 경우는 면적 500㎡미만인 시설물 기타지역의 경우는 면적 1천㎡미만인 시설물

비고 : 1. 시설물의 면적은 연면적을 말하고, 하나의 부지안에 2개이상
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하되,
시설물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연면적은 이를 제외한다.

2.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부표의 기준에 의한다.

3. 시설물의 용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각 용도별로 산정한 설치기준 대
수를 합한 대수를 당해 시설물의 설치기준대수로 한다.

4.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변경 후의
당해시설물의 각 용도별 기준으로 하고, 시설물이 증축된 경우에는 증
축후의 당해 시설물의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5.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대수중 소숫점이하의 단수는 이를 1대로
본다.

6. 숙박시설중 기타 부대시설이라 함은 숙박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되는
식당·카테일바·다실·연회실·휴게실 및 위락시설을 말한다.

7. 공동주택에 관한 기준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
주택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8. 판매시설·창고시설·운수시설 및 공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시설물에 있어서는 당해 시설물의 부설주차
장 대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대수의 주차장을 화물의 하역 기타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수 산정에
관하여는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9. 교육연구시설·전시시설 및 건축법시행령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승용승강기설치대상 건축물에는 당해 시설의 부설주차장대수의 1%
에 해당하는 대수의 주차장을 자체부자유자 전용 주차장으로 구분·설
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 주차장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를 제외하
되, 대수산정에 관하여는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2] 위반 행위별 과징금액(제17조 제1항 관련)

〈내용생략〉